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5일, 한병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의결(원안가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 의원)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사유로 스토킹 범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등 유통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제27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략)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신 설>

<신 설>

<신 설>

9. · 10. (생 략)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

-----제8호 각 목에 따른-----

-----.

제27조(당연퇴직)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으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¹⁾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담보되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도록 그 임용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그런데,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영상 배포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최근 개정('22.12.27. 개정·시행)을 통해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음란한 영상 배포등) 및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등 전송)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선고유예 경우 포함)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³⁾

2)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263, 제2119872)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국회 입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제9조 중 “제8호”를 “제8호 각 목”으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7. (생략)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신설></u> <u><신설></u> <u><신설></u> 9. · 10. (생략)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

제8호 각 목에
따른

제27조(당연퇴직)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만 해당한다.	<u>호</u> -----.
---------	-----------------